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교 육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알림

1. 관련: 2019 교육부 업무보고(2018.12.11.)

2.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, 각 시·도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1부. 끝.

교 육 부 장 관

수신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, 시도교육청

주무관	행정사무관	교원양성연수과장	학교혁신정책관 전결 2019. 4. 10.
협조자 교원정책과장 :	학교혁신정책과장		
시행 교원양성연수과-2134		접수	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(어진동) 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464 팩스번호 044-203-6006 / yg0521@korea.kr / 비공개(5)

공익제보자 보호 방안

❏ 과제 개요

○ **사립학교 교직원** 등을 통해 **내부 부정·비리**에 대한 **공익제보**가 이루어진 경우 **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** 방안 마련

○ **시·도 교육청**별로 설치된 **'공익제보신고센터'** 운영을 내실화하고, **공익제보자**에 대한 **신변노출 방지** 및 **신분보장** 제도 정비

* 시·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를 의제화하여 공감대 확산 필요

❏ 주요 내용

○ **'공익제보신고센터'** 운영 내실화

- 신고번호 홍보, 모바일 접속, 익명제보 등 **접근성 향상** 모색
- 신고 사안들에 대한 **신속한 처리** 등 표준 **운영기준** 마련

○ 공익제보자 **신변노출** 방지

- 신변노출에 대한 **주의의무** 강화 및 **위반자 처벌** 강화
- 공익제보로 인한 **불이익 조치 금지**의 실질적 이행 방안 마련

○ 공익제보자 **신분보장** 제도 정비

- 신변노출 등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가 어려울 경우 다른 공·사립 학교 파견, 교육청 파견 근무 등 **근무지 변경** 조치(법령정비* 필요)

* 공익제보자로 인정될 경우, 원소속지 동의 없어도 파견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

- 다른 보호방안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경우, 공립 교직원 등으로 **특별채용** 방안 검토

* 최소한으로 엄격한 적용 필요